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65
----------	-----

제출년월일 : 1994. . .  
제출자 : 대전직할시교육감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의  
금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50,000원”을 “60,000원”으로  
상향조정 (제6조)

나.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6,500원”  
으로, 숙박비를 “20,700원”으로, 식비를 “11,000원”으로 상  
향 조정하고 “갑지” “을지” 구분하였던 지역구분 및 식탁  
료를 삭제함 (별표1)

다. 국외여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변경하고 금액을  
인상함(별표2)

### 3. 관련 법령 : 별첨

대전직할시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 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지급기준액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 분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당)	(1야당)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정액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위 원	1등급 정액	2 등 정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비고 : 1. 위원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별 표 2 )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2항 관련)

### ( 단위 : 미리미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뉴욕, 런던, 파리, 스토퍼홀름,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

(2) 남·북아메리카주 : 위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4) 중동, 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 인도, 터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지아, 싱가폴, 보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과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수리남

(3) 유럽주 : 텐마아크,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4) 중동, 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1) 아시아주, 대양주: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휴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르안다, 말라위, 스와질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 (일비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 .....	제6조 (일비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

## 신·구·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지급 기준액	절 도	선    박	항    공	차    종	현지교통비	숙    박    비	식    비	직박료	지급기준액	절 도	선    박	항    공	차    종	현지교통비	숙    박    비	식    비
구분	운    임	운    임	운    임	운    임	(1일당)	(1야당)	(1일당)	(1야당)	구분	운    임	운    임	운    임	운    임	(1일당)	(1야당)	(1일당)
의    장	1동급	2통정액	정책	정책	간    지 5,000	간    지 17,000	간    지 11,000	800	의    장	1동급	2통정액	정책	정책	6,500	20,700	11,000
부의장					율    지 4,500	율    지 15,000	율    지 9,500	-----	부의장					-----	-----	-----
회    원	1동급	2통정액	정책	정책	간    지 5,000	간    지 17,000	간    지 11,000	800	회    원	1동급	2통정액	정책	정책	6,500	20,700	11,000
					율    지 4,500	율    지 15,000	율    지 9,500	-----						-----	-----	
					-----	-----	-----	-----						-----	-----	

비고 : 1. "간지"는 서울특별시, 칙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시역으로, "율지"는 "간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차종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 중 1동급은 새마을호 특실, 2동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달리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노선의 최고증금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명												개    경    (안)											
(별표 2) 국회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2항 관련)												(별표 2) 국회여비지급기준표(제7조 제2항 관련)											
구 분	철도	선박	항    공	차종차	일    비	속박비	식    비	증    비    금				구 분	철도	선박	항    공	차종차	일    비	속박비	식    비	증    비    금			
								(1일당)	(1야당)	(1일당)	(1일당)									미만	30일이상	30일	미만
의    장		· 2종금 이상의 통금구 금구별이 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 대는 회장 상금의 선임 금의 철도	1종경액	실비액	가동금	가동금	가동금	150	180	210	가동금	가동금	가동금	150	180	210							
					30	133	53								30	147	133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30	106	50								30	117	99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30	80	43								30	92	72						
위    천		· 통금구별 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그 그 승차에 충전에 요하 요하는 실 비액	1종경액	실비액	가동금	가동금	가동금	140	170	195	가동금	가동금	가동금	140	170	195							
					25	100	53							25	130	107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나동금							
					25	79	46							25	90	78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다동금							
					25	60	40							25	72	58							
공무상		· 공무상의 의 사용로 사용로 인한 인하여 금여 청대요금 청요금 또 는 청대요 하는 경우에 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실비액	라동금	라동금	라동금				라동금	라동금	라동금										
					25	40	33						25	62	49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계      (안)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종글구분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종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중글: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뮌헨, 풍筝	가. 가중글: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풍筝, 흥筝, 모스크바
나. 나동글:	나. 나동글:
(1) 아시아주: 대양주: 일본, 파루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쇠상민,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트리니다, 자메이카 (3) 유럽주: 영국, 북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 중동, 아프리카주: 주제이트, 아일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보아르, 나이제리아, 차이트, 수단	(1) 아시아주, 대양주: 일본, 파루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쇠상민,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트리니다, 자메이카 (3) 유럽주: 영국, 북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주제이트, 아일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우간다 코트디보아르, 나이제리아, 차이트,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대중글:	다. 대중글:
(1) 아시아주, 대양주: 인도, 터키, 아프리스탄, 말글라데시, 알제이제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남·북아메리카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보 라질, 체레, 수리남 (3) 유럽주: 덴마크, 아일랜드, 포트루랄, 헤탈 (4) 중동, 아프리카주: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 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레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셔스	(1) 아시아주, 대양주: 인도, 터키, 아프리스탄, 말글라데시, 알제이제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보 라질, 체레, 수리남 (3) 유럽주: 덴마크, 아일랜드, 포트루랄, 헤탈, 베로, 블란드, 푸가리아, 푸마니아, 폴 란드, 콜라비아 (4) 중동, 아프리카주: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 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 온, 이리오피아, 부르ки나파소, 모리셔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동글:	라. 라동글:
(1) 아시아주, 대양주: 인도네시아, 베이茬, 스리랑카, 피지, 네발 (2) 남·북아메리카주: 파네랄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풀몽비아, 베네수엘라, 에 콰도르, 페루, 펠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베바논, 북예멘, 모로코, 쿠니지, 토안다, 말라위, 스와질란드, 가나 소말리아	(1) 아시아주, 대양주: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발, 풍글 (2) 남·북아메리카주: 구아대칼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풀몽비아, 베네수엘라, 에 콰도르, 페루, 펠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 유럽주: 해당국가 없음 (4) 중동, 아프리카주: 베바논, 예멘, 모로코, 쿠니지, 토안다, 말라위, 스와질란드, 가나, 가나, 소말리아, 나이비아, 탄자니아
2. 비고] 1회 국가 및 도시별 종글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회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종글을 적용한다.	2. 1회 국가 및 도시별 종글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여정지에서 1회 국가의 수도까 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종글을 적용한다.

제12757호

한 보

1994. 7. 6. (수요일)

## 대통령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법증개정  
령을 아래 공포합니다.

대통령 김영삼 [인]

1994년 7월 6일

국무총리 이경재

국무위원 최형우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317호

### 지방자치법시행법증개정령

개정가지민서체일주 내용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시·군 또는 시·군”은 “시·군 또는 시·군”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중 “법 제7조제2항”은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내용과 같이 한다.

제15조제2(시장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태용에 대한 보상금과 차급기준 및 철자) ①법 제32조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차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직무로 인한 사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 1회 1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일비 1회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차료비 전액

②법 제32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경우 및 보상금액 등을 정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회장실 대동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미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기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임명한다.

1. 시장·기방의회의원 1인

2. 경제·기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이무자 공무원 1인

4. 다른 고위에 한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상당액 차액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위원의 경우에만 그려하자 아니하다.

⑥이 법에 고집한 것과의 모찰합의 계약기준과 결차등에 변화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폐기내에 실시한다.

제17조와 제2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회들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세우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세우거나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17조의 규정에 기하여 본회의에서 지정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세거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례시서를 작성하여 기재하고 기재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풀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감기인

5. 지방공기업의 제7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감사·공단 회계 감사·증인인증,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비인·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일부·회계·세전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대지 제6항을 추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기 출보 및 시

제12757호

관 보

1994. 7. 6. (수요일)

<p>“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가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된다.</p> <p>④ 위원은 관계 행정부처 공무원과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시·도기사가 한명 또는 최多한다.</p> <p>⑤ 제47조의4 세자 제47조의8의 규정은 지방조정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p> <p>⑥ 이 법에 규정한 사항과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55조의2(직무이행방법등의 통보 및 보고) 민 제1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대우부장관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기사를 기재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 제1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기사가 이행명령을 한 때</li> <li>민 제1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기사가 대진상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때</li> <li>민 제1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li> <li>기상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때</li> </ol> <p>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56조(지방위원회 위원회 제작 및 제스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우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기사를 기재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 제19조제3항, 민 제98조제1항 또는 민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상자치단체의 장이 제작을 요구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위원회 위원회</li> </ol>	<p>2. 민 제1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기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차이를 조구하게 한 때와 그에 따른 지방위원회 위원회 있는 때</p> <p>3. 민 제98조제3항 및 민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차단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한 때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p> <p>4. 민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기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처리한 때와 처벌처소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한 때 및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p> <p>[별표 2]와 제2호를 삭제한다.</p> <p>[별표 4]의 임여지급액의 원증 “50,000원이내”를 “60,000원이내”로, “30,000원이내”를 “50,000원이내”로 한다.</p> <p>[별표 5] 및 [별표 7]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p> <p>[별표 6]를 “속학비한” 및 “직비한”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비교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수 띠 번</th> <th style="width: 10%;">직 띠 번</th> </tr> </thead> <tbody> <tr> <td>147</td> <td>133</td> </tr> <tr> <td>130</td> <td>107</td> </tr> <tr> <td>130</td> <td>107</td> </tr> <tr> <td>114</td> <td>81</td> </tr> </tbody> </table> <p>2. 국회의비규정의 개정으로 세 표의 여비지급액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거나 끼기는 공무집국회 이미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법원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증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례</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2444호 지방자치법시행령증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총장·한장·동장의 복무등에 관한 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명정석·총장·한장·동장의 복무등 인사운영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출전이 규정이 되한다.</p>	수 띠 번	직 띠 번	147	133	130	107	130	107	114	81
수 띠 번	직 띠 번										
147	133										
130	107										
130	107										
114	81										

제12757호

관 보

1994. 7. 6. (수요일)

【별표 6】

##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원)

구 분	지 금 기준액 율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험	현 거 금액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 도	회장· 부회장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회 원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시 구 자 카 구	회장· 부회장	1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20,700	11,000
	회 원	2등급	2등급액	정액	정액	6,500	16,200	10,500

- 비고 : 1. 회의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어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3. 국내여비규정과 개정으로 7회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개정되거나 개정되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제20조의2관련)

구 분	설치가능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포함)의 수
회원정수 41인 이상	5개 이내
회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	4개 이내
회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	3개 이내

##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理由

地方自治法의 改正령(1994.3.16, 法律 第4741號)에 따라  
地方自治團體期單獨開會費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同法에서 치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現行制度基準上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補充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地方議會議員이 직무로 인하여 出差하거나 朝會  
임은 경우 그 搬宿金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搬宿金과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에  
搬宿費算定表 및 도로자전(제 15조의2).

나. 行政事務의 費支·調查에 관한 사항과 차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계 公務月등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駕籠  
또는 離達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議會議員의 충보  
등으로 500원원이이기 過去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  
(제 17조의4).

다. 地方議會議員의 週休日을 도모하기 위하여 市·郡 및  
自治團體의 경우 週休日을 정할 수 있는 경우  
議員定員은 15人 이상에서 13人 이상으로 하는 등 개정  
要員을 하지 기준을 정의기준으로 조정함(제 20조의2  
및 別表 7).

라. 決算推支費의 敷費 市·道의 경우에는 5人 이내에서  
5人 이상 10人 이하로, 市·郡 및 自治團體 경우에는 3人  
이내에서 3人 이상 5人 이하로 조정하여 決算推支費  
直轄事業을 도모하도록 함(제 46조).

마. 附法에서 개정된 地方自治團體期單獨開會費 제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제 47조의3  
및 别表 10).

바. 地方議會議員의 月費費 市·道議會議員의 경우에는  
現行 5萬원에서 6萬원으로, 市·郡 및 自治區 議員議員의  
경우에는 원래 3萬원에서 5萬원으로 월정에 맞게 조정  
함(제 47조의4).

사. 公務員薪俸規定의 개정된에 따라 이에 맞추어 地方議會  
議員의 國內·外 賦費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 5  
및 別表 6).  
  
〈별지 제 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